

2015년 정기이사회 의사록

1. 일 시 : 2015. 03. 16(월) 11:00
2. 장 소 : 대표이사실
3. 참석임원: 이사 총 7명중 6명, 감사 1명 참석
대표이사 장영순, 이사 이상주, 이사 김정환, 이사 김영길,
이사 홍인식, 이사 이충호, 감사 하상준
참석직원: 공보연원장, 김덕준국장, 도경옥원장, 손소희법인국장
4. 심의안건: 1) 201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
2) 2015년도 사업계획 및 1차추경예산(안)
3) 정관 일부개정정관(안)
4) 기타토의(안)
5. 회의내용
 - 1)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
 - 장영순의장 : 재적이사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하다.
 - 2) 전차회의록 접수승인
 - 장영순의장 : 간사에게 전차회의록을 낭독케 하고 이의여부를 물은 결과, 이사진 전원이 이의 없다고 답하여 전차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승인하기로 선포하다.
 - 3) 감사보고
 - 장영순의장 : 2014년도 감사보고를 하상준 감사에게 요청하다.
 - 하상준감사 : 2015년 2월 16(월) 10:00~15:00까지 하상준, 한상현감사가

법인 및 직영시설에 대해 실시한 2014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낭독하다.

○ 이상주이사 : 하상준, 한상현 감사님께서 법인 및 직영시설의 운영전반에 걸쳐 철저히 감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, 각 기관별로 감사보고서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보완해줄 것을 요청하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다.

○ 김영길이사 : 이상주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하다.

○ 장영순의장 : 동의와 재청에 따라 찬성여부를 묻고,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2014년 감사보고서를 접수하기로 하다.

4) 안건상정 및 결의사항

(1) 제1안건 201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심의

○ 장영순의장 : 법인과 각 기관의 2014년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한 일괄 상정의 찬성여부를 묻고,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각 기관별 제안설명을 요청하다.

○ 손소희법인국장 : 2014년 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
○ 손소희원장 : 2014년 예림원 사업실적 및 결산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
○ 김덕준국장 : 2014년 헨인헨 사업실적 및 결산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
○ 공보연원장 : 2014년 예림일터 사업실적 및 결산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
○ 도경옥원장 : 2014년 공동가정 사업실적 및 결산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
○ 장영순의장 : 제안설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.

○ 김영길이사 : 두 감사님의 철저한 감사보고를 통해 사업실적과 결산을 검토하였고 결과, 법인과 각 기관들이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다.

○ 이충호이사 : 동의에 재청하다.

○ 장영순의장 : 동의와 재청에 따라 찬성여부를 묻고,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제1안건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.

(2) 제2안건인 2015년도 사업계획 및 1차추경예산(안) 심의

- 장영순의장 : 법인과 각 기관의 2015년 사업계획 및 1차추경예산(안)에 대한 일괄 상정의 찬성여부를 묻고,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각 기관별 제안설명을 요청하다.
- 손소희법인국장 : 2015년 법인 사업계획 및 1차추경예산(안)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- 손소희원장 : 2015년 예림원 사업계획 및 1차추경예산(안)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- 김덕준국장 : 추경사유는 지자체와의 협의에 따라 예산서 양식과 예산과목의 변경을 반영한 2015년 한인회 사업계획 및 1차추경예산(안)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- 공보연원장 : 추경사유는 기능보강사업 확정에 따른 자산취득비 118,800,000원 증액을 반영한 2015년 예림일터 사업계획 및 1차추경예산(안)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- 도경옥원장 : 2015년 예림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 및 1차추경예산(안)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.
- 장영순의장 : 주요추경사유는 결산에 따른 이월금 조정과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확정에 따른 세입·세출의 조정이며, 각 기관의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검토하였음을 말하고 제안설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.
- 홍인식이사 : 2015년도 사업계획 및 1차추경예산(안)을 검토해 보니, 부득이한 수입 및 사업의 변동에 따른 합당한 세출예산의 편성이라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다
- 이충호이사 : 동의에 재청하다.
- 장영순의장 : 동의와 재청에 따라 찬성여부를 묻고,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제2안건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.

(3) 정관 일부개정정관(안) 심의

- 장영순의장 : 국유지매입과 인천예림학교 일반직 직급변경에 따른 정관 일부개정정관(안)을 상정하다.
- 장영순의장 : 법인에서 2014년 12월 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매계약을

체결하고 매입한 토지는 ‘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50-37’ 소재의 임야 383㎡로 268,100,000원에 매입하였으며 현재 인천예림학교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본 법인의 기본재산이 총면적 15,711.57㎡로 증가되고 총액은 13,326,821,600원으로 증액되어 「(별표1) 기본재산목록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. 또한, 201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운영지침에 따라 사무직원 명예퇴직관련 내용과 사무직원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일반직 직급을 변경하고자 합니다.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정관 제62조(명예퇴직) ① “사립학교사무직원 중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인 전 1년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”를 “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신청 및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과 학교 주무관청에서 시행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계획을 준용한다.”로 수정하고 제②항은 삭제하고자 하며, 제67조(하부조직) “실장은 5급으로 보하되”란 문구를 “실장은 6급으로 보하되”로 수정하고 「(별표3)예림학교 일반직 직급표(제68조 관련)」를 변경하고자 합니다. 첨부한 정관 일부개정정관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을 요청하다.

○ 김정환이사 : 법인의 기본재산변경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운영지침에 의거 인천예림학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다.

○ 김영길이사 : 동의에 재청하다.

○ 장영순의장 : 동의와 재청에 따라 찬성여부를 묻고,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제3안건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.

(4) 기타토의

○ 장영순의장 : 기타토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묻자 참석이사 전원이 없다고 답하다.

6. 폐회

○ 장영순의장 : 폐회동의를 확인한 결과, 전원이 찬성하여 폐회를 선언하고 12:00에 폐회하다.

위와 같이 의결하고 참석이사 전원 기명날인하다.

2015. 03. 16.

사회복지법인 손과손

대표이사

장영순

이 사

이상주

이 사

김영길

이 사

김정환

이 사

홍인식

이 사

이충호

감 사

하상준

